[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5056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5-05-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15

# 순대고집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218, 115호, 116호]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 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순대고집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8, 115호, 116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		
순대고집	개인사업자		2022.12.28.	박진우	경기도 805550	77 <del>-</del> ( <i>ध</i>		
	법인등록번호		_	사업자등록	루번호	227-	-12-92210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순대고집	명칭의 유래 설명
상 호	순대고집 OO점	
상표(서비스표)	순대고집	상표 등록번호: 제40-2227125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_	_	_	_	_	_
2023년	197,405	44,105	153,299	1,412,816	121,351	131,351
2024년	_	_	_	1,817,715	_	_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024년 자산총계 등은 재무재표 작성 완료되면 변경등록 할 계획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으며 직영점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처 지이	사업경력					
전인역구	<u></u>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진우	대표	2022. 12. 28. ~ 현재	대표	업무총괄 및 실무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sup>-</sup> 상근	수(명) 비상근	직원수(명)	
2024년 12월 31일	1	_	11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순대고집	영업표지	2023.1.3. 출원	출원 제40-2023-0001452호	박진우	2034.7.29.
(상표권)	사용 등	2024.7.29. 등록	등록 제40-2227125호	기선기	2004.7.2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Π. 가맹본부의 순대고집 가맹사업 현황

1. **순대고집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3년 2월 **1**일)

#### 2. 순대고집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순대고집	순대고집	박진우	가맹사업 개시 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8, 115호, 116호

#### 3. 순대고집 업종

영업표지	업종					
스테크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순대고집	한식	순대국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순대고집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2.12.3	1.	2	2023.12.3	1.	2	2024.12.3	1.
\\ \frac{4}{3}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_	_	_	1	_	1	1	_	1
서울	_	_	_	_	_	_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1	_	1	1	_	1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 5. 바로 전 3년간 순대고집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_	_	_	_	_	_
2023	_	_	_	_	_	_
2024	_	_	_	_	_	_

#### 6. 순대고집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당사는 가맹사업 개시 전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24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구 매출액		
지역	2024년 지역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sup>5</sup> 매출액(		연간 <sup>3</sup> 매출액(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_	-	_	-	_	_	_	-
서울	_	_	_	_	_	_	_	-
부산	_	-	_	_	_	_	_	_
대구	_	-	_	ı	_	_	_	_
인천	_	-	_	_	_	_	_	_
광주	_	-	_	_	_	_	_	_
대전	_	-	_	-	_	_	_	_
울산	_	-	_	-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충남	_	-	_	_	_	_	-	_
전북	_	_	_	_	_	_	_	_
전남	_	-	_	_	_	_	-	_
경북	_	-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 8. 순대고집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는 가맹사업 개시 전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순대고집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2024년 재무제표 작성 후 변경등록하겠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우리은행	하남미사역지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1	02-1588-50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 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공정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 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순대고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6,500			
가입비	11,000	계약체결 시	개점 이전까지 계약해지 시 일부공제 후 반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교육비	5,500	계약체결 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2) 당사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6,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현금)보증금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25,000				99㎡ (30평 기준)
인테리어	미정	90,000	3,000	업체와 계약에 의함	업체와 계약에 의함	
간판 및 사인물	미정	10,000	333	업체와 계약에 의함	업체와 계약에 의함	
영업설비 및 집기	별첨3 참조	20,000	666	업체와 계약에 의함	업체와 계약에 의함	
상품 및 원부재료	별첨3 참조	5,000	166	업체와 계약에 의함	업체와 계약에 의함	

위 금액은 당사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 간판 및 사인물 공사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 등 기획관리비 명목으로 3.3㎡ 기준으로 110천원을 공사시작 전 3일 이전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방공사 및 완비, 전기증설 비용, 냉난방, 화장실, 철거, 가스공사, 전면공사, 소품, 어닝, 외부닥트, 외부공사, 오픈홍보물 등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1) 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 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
	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순대고집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당사는 가맹금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카드매출액1%	다음월 5일	_	소멸성비용	
광고분담금	미정	미정	통지받은날 15일 이내	미실시	광고실시 후	
판촉분담금	미정	미정	통지받은날 15일 이내	미실시	판촉실시 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500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실시	교육 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미정	미정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미정	미정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정	미정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_	
POS 사용료	미정	미정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가맹본부에 반드시 매출공개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_	계약상 일체의 금전 지급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사업 개시 전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_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가맹점 불시체크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가맹점 불시체크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갱신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순대고집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순대고집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가맹본부를 통해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초기 가맹비와 교육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당사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등 영업 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되,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한다.

귀하는 계약의 종료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점포를 폐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전에 당사에게 폐점에 대한 통보를 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순대고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당사는 가맹사업 개시 전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순대고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2024년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순대고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2024년 가맹사업 시작전으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2) 당사가 순대고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2024년 가맹사업 시작전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2 취급하는 상품,	용역 및 권장가격 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지정 거래상대방에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다른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해당제품 판매 불가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2 취급하는 상품,	용역 및 권장가격 참조	서면, 이메일 등으로 안내	2025. 5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만 집중 함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순대국 주상품으로 하는 업종	순대고집	_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설정방법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일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 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특수상권 내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배달지역을 영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순대고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

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 변화 등에 따라 향후 공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 변화 등에 따라 향후 공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순대고집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

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 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게 제41조 제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계 제41조 제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트 제41조 제1항
○ [순대고집]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41조 제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제9조(가맹점의 표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10조(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21조(계속가맹금)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23조(구입요구품목의 조달과 관리)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26조(자점매입 금지)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29조(영업의 표준화와 취급품목)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30조(광고 및 판촉) 제4항, 제6항,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31조(방문점검) 제1항,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32조(영업시간 및 복장)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33조(권장가격)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 제34조(회계장부 및 보험)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35조(점포환경개선)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36조(영업의 양도)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39조(개점 후 교육훈련)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40조(경영지도)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44조(영업비밀의 보호)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제45조(경업금지)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제1항
○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42조 제1항
○ 기타 본 계약상 "을"에게 주어진 작위 또는 부작의의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42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Ó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2조 제2항
Ó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2조 제2항
Ó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2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후의	제42조	제2항
<ul>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기 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li> </ul>	·다) '라	제42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 다 기반	제42조	제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2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연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차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2조	제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2조	제2항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영업양도일 60일 전까지)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최초가맹금 및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순대고집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종료 후 1년동안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계약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순대고집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을 허가 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순대고집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시 ~ 22시	월 27일 이상	_

귀하가 연속하여 2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4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별도 안내	
친절도	담당자 매장 방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별도 안내	
품질 관리 (서비스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별도 안내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순대고집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J. H	광고	부두	<b>計비율</b>	분담 절차	비고
구분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한당 설사	1111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과크 케히 코크 ㆍ키메ᅯ이	광고행사 동의 절차를 거 친 후 전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판매점부담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가맹점사업자 의 5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1 -7 -11 ·1	전국단위 판촉행사	행사에 띠	<b>라라</b> 달라짐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판촉행사	기타 개별행사	가맹점시	·업자 부담	행사 시행 → 종료 후	선제 석용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 실시가능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또는 귀하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 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 : 제18조의 최초가맹금의 10%
- 2. 계약체결일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 : 제18조의 최초가맹금의 30%
- 3. 계약체결일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 이전 : 제18조의 최초가맹금의 50%

제3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가 인테리어 공사 등 및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는 귀하에게 진행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26조(자점매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 2,000만원(이천만원)을 지급하여 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가 제43조(계약의 종료와 조치)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지체일(日) 당 20만원(이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제44조(영업비밀 보호)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 3,000만원(삼천만원)을 지급하여 야 합니다.

귀하가 제45조(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계약기간 존속 중의 경우 5,000만원(오천만원), 종료 후의 경우 3.000만원(삼천만원)을 위약벌로 지급해야합니다.

귀하가 제4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당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위약벌로 3.000만원(삼천만원)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잔여 가맹계약 월 수 X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 \*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15일 이상 운영하지 않은 월은 제외한다.
- \* 다만, 잔여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년으로 한다

당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나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귀하 는 당사에게 할인·면제·무상지원한 금전을 반환하여야합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 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매출액 보고를 누락 또는 허위로 하는 등 로열티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허위 또는 누락으로 인한 지급하지 않은 로열티 금액의 5배를 당사에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상담	<ul><li>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li><li>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li><li>가맹희망자 상담</li></ul>	D-49	
점포개발	- 입지 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3	IV.가맹점사업자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2	의 부담 참조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8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5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2	
영업설비,집기 입고	- 주방설비, 의자탁자 등	D-5	
초도물품 입고	- 식자재, 유니폼 등	D-5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 및 진행순서는 직영점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 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ul>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li>〈분할지급 시 절차〉</li>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li> <li>(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 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 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 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요원 등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을 가맹점사업자에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사업자 요청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 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 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점 사업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순대고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합숙 실습교육 집단 강의 등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별도공지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수시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별도공지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순대고집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일	5,500	개점 전 이수
보수 교육	필요 시	500	필요 시
수시 교육	필요 시	협의	필요 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미사역점	경기도 하남시 미시강변중앙로218 성사타워 1층 115, 116호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11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817,715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붙임 1]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붙임 2] 취급하는 상품, 용역 및 권장가격

(단위 : 원)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제한내용 및	가격 통보방법	위반시 책임	비고
00,070	E0717	조건	110708		
순대국밥	11,000		서면, 이메일 등	상품 공급의 제한 및 중단 계약 해지	
얼큰순대국밥	11,000				
국밥정식	15,000				
뼈해장국	12,000				
맛보기순대	11,000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비빔막국수	10,000				
물막국수	10,000				
왕만두	7,000				
공기밥	1,000				
머리수육전골	36,000				
얼큰해장술국	26,000				
해물듬뿍파전	22,000				
편육&홍어무침	22,000				
우거지감자탕	38,000				
소주	5,000				
맥주	5,000				
막걸리	4,000				
음료수	2,000				

#### <구입강제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구입권장품목>

\* 당사는 구입권장품목을 통해 차액가맹금 또는 경제적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 또는 귀하가 선택하는 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 규격에 따라 구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설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주방집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주방설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원,부재료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연번	가맹점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 \*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영업 중인 가맹점 전체를 제공합니다.
- \* 귀하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되는 즉시 제공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아래 빈칸에 반드시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7LNH 난 년	상호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b>영업표지</b>		
가맹본부	주소			
까ᄜᆟᇚᆉᆉ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	주소			
수령일시	ex)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ex) 가맹본부 사무실 등 구체적으로 작성			
A 러취 O	ex)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			
수령확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	가맹거래사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000호)		
자문받은 경우	자 문 일 :	년 월 일		